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2016. 10. 28)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 은 모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10월 14일(금)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8일(화)

## 4. 관계법규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제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정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동(同) 조례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에서 존속기간을 5년으로 부칙<조례 제830호, 2011.9.22>에서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 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종전 부칙<조례 제830호, 2011. 9. 22.> 제5조에서 이 조례는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존속기한 5년 만료일이 2017. 1. 1.일로 다가옴에 따라 5년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 내용으로

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제5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연장함

- 종전 : 2012. 1. 1. ~ 2016. 12. 31.에서

- 변경(연장) : 2017. 1. 1. ~ 2021. 12. 31. 까지로 정함

- 2015회계연도 마포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개별기금 15개(재난 관리기금외 14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1억 3,600만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은 8억 6,250만 9,960원으로 58억 7,250만 9,96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2015년도)말 조성액은 61억 2,600만원이 조성되었음

기금 조성현황

(단위:원)

2014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2015년도말 현재액 (A+B-C)
	조성액(B)	사용액(C)	
11,136,000,000	862,509,960	5,872,509,960	6,126,000,000

기금 결산현황

(단위:원)

수입내역		지출내역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 계	11,998,509,960	합 계	11,998,509,960
예 수 금	600,000,000	예수금원리금상환	5,610,000,000
이자수입	262,509,960	예수금이자상환	262,509,960
예치금회수	11,136,000,000	예 치 금	6,126,000,000

- 검토의견으로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설치하는 특정한 자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6. 5. 18.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관리로 그 간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저축수단에 기금을 예치함으로써 마포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기금 사용부서에서 사업 기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그 밖에 기금은 향후에도 통합관리 기금 담당부서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同)조례 부칙에서 시행일을 종전 2012. 1. 1.일부터 2017. 1. 1.일부터 시행한다. 로 변경하고 2016. 12.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 1. 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됨.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기획예산과

(2016. 10. 28)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 은 모 ]**

#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 안 건 명

-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10월 14일(금)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8일(화)

## 4.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 재산의 조성)

## [검토보고]

###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2014.5.28.)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의결 사항 :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가부 결정(의결)

나. 출연 필요성 : 마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인력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 마포 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마포지역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함

다. 2017년도 출연금(예정액) : 4,800,000천원

- 산출기초 : 2017년도 총사업비 예산 9,500,000천원 × 51%

라. 마포문화재단 총 사업비(예산), 출연금 및 비율(출연금/총 사업비-단위 : 천원)

2017년도 총사업비 예산	출연금	
	금액	비율(%)
9,500,000	4,800,000	51%

마. 마포문화재단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890,496	1,460,674	2,037,972	2,210,777	3,219,882

##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그 동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을 예산심의와 함께 일괄 처리해 오고 있었으나, 2014.5.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출자-출연을 엄



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출연금 주요내용으로는**

1) 대 상 :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

2) 출연근거

①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3) 출연기관 : (재)마포문화재단

4) 우리 구 출연일자 : 2011. 2. 28. 창립 회원(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입)

5) 출연이유 : 「서울특별시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포구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마포구민의 문화 복지진흥 증대를 목적으로 출연금을 출연함

○ (재)마포문화재단은 2007. 9.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마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 건물은 문화센터 및 체육센터 2개 동(棟)에 연면적 19,755㎡, 프로그램은 문화센터 동(棟)에서 어린이 유아체능단 운영 등 135여개의 다양한 문화강좌와 체육센터 동(棟)에서 헬스장 운영 등 160여개의 스포츠 강좌를 운영하면서 7개 팀에 직원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마포구 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음

○ 현재 마포문화재단에서는 출연금으로 마포구민에게 많은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포문화재단 비전 2020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마포구 지역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그 간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 1)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 제도 정비와 직원 성과평가제 도입 등 창의적 경영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 2) 고객중심의 고객모니터단 운영과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편익시설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고객서비스 향상을 하였으며,
- 3) 문화동 2,3층을 증축하여 살롱콘서트, 마포미협 전시, 예술단체 연습공간 등 다양한 공간운영으로 신규수익을 창출하고 일본 가츠시카구 국제문화예술교류 행사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 및 인사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 마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향상시켰으며
- 4) 수준높은 마포 공연예술 향상을 위해 클래식, 연극, 댄스 시리즈 등 다양한 레퍼토리 구축을 통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공연전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확대하고,
- 5) 꿈의극단(30개), 꿈의합창단(19개) 등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커뮤니티아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술축제인<꿈의 무대>를 개최하여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 6) 그 밖에 사회공헌 예술 프로그램인 MAC 객석 나눔 “뷰티 프로젝트”와 마포문화충전 “천원의 문화공감”, 주부대상 “살롱드마포”, 청소년 대상 해설음악회 “청소년 썸머페스티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 7) 수영장 등 총 160여개 강좌도 위탁수업 및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시킴은 물론 어린이 대상 “마포아트센터 토요일문화학교” 운영 등 총 135여개의 문화예술 강좌를 포함하는 문화예술아카데미를 잘 운영하고 주민들로부터도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 구성내용이 좋고 마포문화재단이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 **1. 문화 분야 활성화를 위해**

- 1)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마포문화재단 "VISION 2020" 수정보완하여

- 재단 조직 및 사업체계를 점검하고, 기념축하공연, 커뮤니티 거리축제, 학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마포 문화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 2) 꿈의극단, 꿈의합창단에 이어 꿈의무용을 추가하여 마포 주민 커뮤니티아트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천원의 문화공감, 뷰티 프로젝트, 아트 인 스토페이스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주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 2. 생활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해

- 1) 스포츠 맥 수영 등 160여개의 강좌와 더불어 주민욕구를 반영한 신규강좌를 개설하고, 강사평가제, 강사 교육 등 강사 책임제를 강화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 2) 지역스포츠와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비수기 시간대를 활용한 단체 위탁 연계 수업을 확장 하는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내실있는 마포 문화재단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

## 3. 마포문화재단 주요 추진사업 계획(2017년도) : 별첨 1

- 검토의견으로 동(同)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마포문화재단 출연금의 예산편성 전 구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재단은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새로운 비전과 발전 계획을 가지고 그 간 운영해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고 수익창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부족한 문화공간 마련을 위해 문화동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다양한 문화 및 체육공간을 하였고, 노후화된 문화 공연 장비 교체와 시설물 등을 개·보수 하는 등 최상의 문화·체육시설 프로그램 및 시설물 관리로 주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음
- 또한 지역문화 활동분야에서도 “꿈의 합창단”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찾아 가는 음악회” 등 사회공헌 예술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밖에 마포아트센터 각종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위탁수업 방식도 개발하여 활성화 시키는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마포구 주민의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재)마포문화 재단에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출연금을 출연하여 관리·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마포문화재단 주요 추진사업 계획(2017년도)

### 1. “교육문화도시”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조직체계 강화 및 예술경영 시스템 구축

구 분	세 부 내 용
<b>미래지향적 문화 사업 체제 확립</b>	마포문화재단 VISION 2020 수정 보완 · 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하여 재단 재도약의 원년 선포를 위한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문화기관간 네트워킹, 사업연계를 통한 재단 위상 강화 및 외부지원금 유치
<b>높아진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 현대화</b>	마포아트센터 대극장 리모델링 추진 : 2018년 염리구역 포함 마포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인구 유입 등 문화수요 증가에 걸맞는 공연시설 완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 시설 개선 추진

### 2. 지역문화예술의 일상화

구 분	세 부 내 용
<b>마포커뮤니티축제 꿈의 무대</b>	꿈의 극단(30개), 꿈의 합창단(19개), 꿈의 무용(10개), 꿈의 밴드(5개), 꿈의 오케스트라(1개), 꿈의가니발(2개) 등 마포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아트축제 「꿈의 무대」 통합브랜드 구축
<b>문화예술 조찬포럼</b>	마포구 관내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시민 사회단체와의 네트워킹 및 사업공유를 통한 문화예술 정책 허브 구축
<b>청소년 문화예술교육</b>	문화돌봄 체인지 업, 마포지역 문화예술교육 꿈타래 엮기

### 3.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구 분	횟 수	장 소	세 부 내 용
<b>천원의 문화공감</b>	6회	아트홀맥/ 플레이맥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장르 저명한 아티스트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천원에 제공
<b>뷰티 프로젝트</b>	연중	아트홀맥/ 플레이맥	현재 운영중인 객석나눔 사업 운영방식 확대 개선 - 수혜대상 확대, 추천 및 산형방식 다양화, 객석나눔 확대
<b>살롱 드 마포 (Salon De MAPO)</b>	6회	문화동 2층 스튜디오	주부층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주간 11시대의 살롱음악

구 분	횟 수	장 소	세 부 내 용
청소년 씬머 페스티벌	3회	아트홀맥	여름방학을 맞은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해설 음악회
아트스퀘어 마포	2회	광장	아트센터 야외 광장을 활용하여 작품성이 높은 설치전시를 진행, 구민 문화향유에 적극적으로 기여
렉처콘서트 '세계 음악 기행'	2회	아트홀맥/플레이맥	학생과 주민들의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콘서트 기획
찾아가는 음악회	10회	마포전역	직접 찾아가 전하는 문화예술공연 서비스
아트 인 스토페이스	5회	마포구 관내 역사유적 및 문화예술명소	- 역사 공간의 스토리텔링과 공연예술의 만남 - 관내 역사 공간에 부합된 인문학, 공연예술을 통하여 공간 특성화 및 향후 문화예술관광자원으로 활용

#### 4. 레퍼토리 구축을 통한 양질의 공연전시 운영

○ 레퍼토리 공연 22개 프로그램, 270회 공연 기획·운영

구 분	세 부 내 용	
세대공감 시즌프로그램	성인일반	팝&콘서트
	주부	살롱 콘서트
	청소년	청소년 씬머스페셜
	어린이	아장아장 음악회, 어린이 뮤지컬
클래식 시리즈	베스트 오케스트라, 콘체르토 시리즈 등	
댄스 시리즈	발레갈라 [The Masterpiece], 호두까기 인형, 체코 예술단 내한공연 등	
연극 시리즈	망원동 브라더스 시즌 3, 장기 뮤지컬 시리즈 등	
렉처 콘서트	베토벤 음악여행, 명작콘서트 등	
특별기획	신년음악회, 송년음악회 등	

#### 5. 문화예술 아카데미 전문화

구 분	세 부 내 용
분기별 전문 문화 예술 아카데미 프로그램 발굴	3개월 단위 아카데미 개강, 상시 100여개 강좌 및 1000여명 회원 유지
	분야별 아카데미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속 발굴 및 활성화 견인
	신규 아카데미(발레 아카데미, 예술인문 아카데미) 강좌 활성화 견인

구 분	세 부 내 용
회원 창작욕구 증진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 공간개선 및 접근성 강화	교육실별 시설물 보완 지속
	아카데미 홍보물 센터 외 배포처 추가 및 관리 강화
유아체능단 연간 정규과정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학기로 구분하여 주중 9시~14시까지 정규 교육과정 운영, 14시~15시 특별 프로그램 운영
	유아체능단 주간 교사회의 개최 및 월간 자모회의 개최

## 6.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세 부 내 용
주민욕구를 반영 한 신규강좌 개발 및 개편 지속화	기존강좌의 안정적 운영 및 이용률 저조 강좌 개편
	유아수영 안정강화를 위한 보조강사제 도입
	시대 흐름과 이용 수요 욕구를 반영한 강좌 개발(헬스일일입장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강사평가제 이외 온라인을 활용한 비 정기적 회원 평가 참여 방안 마련
	강습 시 회원응대, 기초지도법 중심의 매뉴얼 마련, 강사 교육자료로 활용
	강사 책임제 강화를 위한 안내판 개선(강사사진, 강사명 등 게시)
위탁수업 및 지 역연계프로그램 지속적 확대	지역생활 스포츠문화 기여를 위한 위탁수업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운영
이용편의증진 및 안전강화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	· 체육관 : 소체육관 바닥샌딩, 종합체육관 벽면보호대 교체, 냉방기 설치 등
	· 헬스장 : 벽면 도색 등 환경 개선
	· 골프장 : 바닥 인조잔디 및 복도 카펫트 교체, 퍼팅장 샷시설치, 벽면 도색 등
	· 퍼스널장 : 칸막이 철거 등 환경 개선

#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5.9.25.] [법률 제12507호, 2014.3.24., 제정]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979호, 2014.11.20., 일부개정]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징수과	1

(2016. 10. 28)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 은 모 ]**

#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 1. 안 건 명

-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10월 14일(금)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8(화)

## 4. 관계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검토보고]

#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 <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의결 사항 :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나. 출연 필요성

- 1)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2)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비용
- 3) 지방세 연구원 운영 경비 조달

다. 2017년도 출연금(예정액) : 14,394천원

- 산출기초 :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

2015년 결산액(보통세-재산세,등록면허세) 95,955,040천원 × 1만분의 1.5

라. 출연금 현황(연도별)

(단위: 천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585	11,502	11,848	12,123	12,664

##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추진사항

- 1) 대 상 :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 2)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 3) 출연단체 : 지방세연구원
- 4) 우리 구 가입일자 : 2011. 2. 28. 창립 회원(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입)
- 5) 출연이유 : 지방세기본법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함

6) 타 자치단체 및 마포구 출연금 비교

< 2017년도 기준 >

가) 전국 자치단체 출연금(예상 총액) : 112억 20만 3천원

나) 전국 자치단체(평균) : 4,609만 1천원/ 출연율 : 0.412%

다) 마포구 : 1,439만 4천원 / 출연율 : 0.129% (단위: 천원, %)

구 분		2017년(예정)	2016년	증감
출연금	총합계	11,200,203	8,276,654	2,923,549
	우리구	14,394	12,664	1,730
	평균	46,091	34,060	12,031
출연율	우리구	0.129	0.153	-0.024
	평균	0.412	0.412	0

※ 우리 구 출연금 부담률

마포구는 전국 자치단체 출연금 112억 20만 3천원의 0.129%인 1,439만 4천

원으로 자치단체 평균 0.412%인 4,609만 1천원보다 3,169만7천원이 적게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同)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따라 2016년도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출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연구원”을 설립·운영 중으로 2017년도에 마포구 출연금은 1,439만 4천원으로 이는 전년도인 2016년도 출연금 1,266만 4천원의 13.66%인 173만원이 증가하였음.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방세법 법규해석 및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방세 업무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와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연구 등 주요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회원들에게 1) 지방세연구원 연구자료, 월간회보 등 발간 지방세 정보제공 2)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무료이용(회원 가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동(同) 계획안은 이번에 출연하는 마포구 출연금 1,439만 4천원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의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5/10,000(0.015%)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출되었고,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출연해야 하는 법정출연금으로 2017년도에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책자 및 정보서비스 혜택과 제공받은 지방세 관련 업무 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우리 구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마포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293호, 2015.5.18., 일부개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9.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타법개정]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

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징운동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